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5. 2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4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박유규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6. 4. 2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유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 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,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 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 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지원대상자 선정(안 제3조)
 -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현황조사 및 동주 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 정
-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(안 제4조, 안 제6조)
-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-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제정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독사의 조기발견, 조기대응 등의 예방책을 마련하고,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.
- 조례안은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- O 주요 내용은
 -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 조사와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 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토록 함.
 -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함.
 - · 추진계획에는 현황조사를 통해 등록·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서비 스 지원 사항,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사항, 고독사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둠.
 -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

구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 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
- 지원내용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,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 등의 설치,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,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 의 연계와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, 보건·복지 서비스 연계 및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위법인 「노인복지법」범위 안에서 최소한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편안한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시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(박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7

발의연월일: 2016년 4월 일

발 의 자: 박유규의원 외 7 명

1. 제안이유

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,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자 선정(안 제3조)
 -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현황조사 및 동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

다.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(안 제4조, 안 제6조)라.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마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(안 제8조)

3. 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- 「지방자치법」제12조(주민의 자격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6. 4. 15 ~ 4. 21) :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노인"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.)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- 2. "홀로 사는 노인"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.
- 3. "고독사"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- 4. "고독사 위험자"란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대상) 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영등포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
 - ② 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

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

제4조(구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

제6조(추진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·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2.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 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민·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
- 2.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등
- 3.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,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.
- 4.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